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7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8.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2016. 5. 11. 1,000만 원, 2016. 5. 15.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변제받기로 정하고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아들 E이다. 원고는 금전 대여 이후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문어를 낚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는데, E의 어업이 어려워지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2016. 5. 11. 1,000만 원, 2016. 5. 15.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6. 5. 15. 피고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3,5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차용 주체가 피고가 아닌 아들 E이라고 다투 뿐이므로, 원고 주장의 금전대여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다만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2016. 5. 11. 1,000만 원, 2016. 5. 15. 2,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가 아닌 E 명의의 계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의 아들 E은 2022. 9월경 원고의 배우자와의 통화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당시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서 쓰니까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직접 금전의 대여를 요청한 것은 피고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E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여금이 E의 어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금전을 자신의 처분행위로서 아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5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상대방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6. 6. 15.이라고 주장하며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6. 6. 15.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피고는 3,500만 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7. 17.로부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상당한 기간으로서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성희